

##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-31호

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22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발명자 추가·정정 범위 제한, 의견서 제출 제한, 대리인 위임장의 증명서류 한정, 심사순위 예외규정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

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,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명확화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(안 제5조)

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·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.

### 나.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(안 제8조)

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.

### 다.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(안 제11조)

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하여 제출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반려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마련함.

### 라. 특허여부 결정 후 발명자 추가·정정 범위 확대(안 제28조)

진정한 발명자의 성명계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여부 결정 후에도

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.  
마.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 및 심사보류시 확인절차 명시(안 제38조 및 제40조)

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하고, 심사보류할 경우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.

바. 의견서 제출 제한 폐지(안 제41조)

출원인이 특허청의 문서 송달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의견제출

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 : 특허심사제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.go.kr> 책자/통계 → 법령 및 조약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○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
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(우 35208)

전화 : (042)481-8243, Fax : (042)472-4743

전자우편 : maro87@korea.kr